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므로 당해 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Q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

A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한솔노무사사무소(031-877-732-3)

Q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A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사용자는 1주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상사정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한

날은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되며,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1주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1주일일 평균 1일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전 주휴일은 이미 주휴일이 아니

전·기·상·식

한전 포천지점 **신재우**
수요관리파트장



Q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한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 명의변경 및 전기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그 변경내용을 발생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해서 고객이 변동되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구 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게 되므로 구고객의 전기요금을 신고객이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의변경 신청은 구고객의 이사일 하루전 한전 근무시간까지 아래의 구

비서류를 갖추셔서 관할 한전에 직접 내 받 또는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1주택 수거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은 신청불가)

가.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 (전화신청 가능)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 (한전양식)

- 고객변동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한전양식)

- 고객변동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법원 확정필인 날인)

나. 계약전력 6kW이상 고객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경된 경우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소유주 동의 날인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고객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전기요금 보증서류 (현금 원치, 고객회피시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으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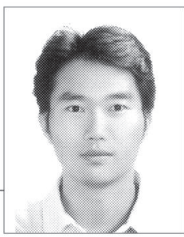
-소유주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시)

☞ 변동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합니다.(변동일이 속한 월의 신·구고객별 사용전력량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 결정합니다.)

(031-539-0257)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하효신**
안과 과장



으로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보편적이며 간편한 치료 방법은 모자라는 눈물을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것인데, 대부분의 인공 눈물은 장기간 점안해도 별 부작용이 없으며 물약, 연고 등 몇 가지 다른 형태가 있는데, 증상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간혹 인공눈물에 포함된 보존제 성분에 자극이 있는 사람이 최근 개발된 보존제 성분이 없는 1회용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제에 자극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인공눈물을 하루 6~8회 이상 자주 점안하는 경우에는 각막독성 우려가 있어, 보존제가 없는 1회용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인공눈물은 규칙적으로 넣어야 하는 점입니다. 불편을 느낄 때만 넣는 경우에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문의전화 : 031-939-9246)

건강안(안구건조증)

건강안(안구건조증)은 일반인들이 안과를 방문하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보통 눈물이 부족하게 되는 중년 이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잘 살펴보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아주 흔해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같은 기타 안과 질환과는 달리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종종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유발시키고, 감기처럼 수 일 내 자연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장기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은 이물감, 따가움, 시야흐림, 눈물, 거북함, 눈부심 등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것은 건조감으로, 이러한 증상은 에어컨, 선풍기, 히터, 장시간의 독서, TV 시청, 컴퓨터 작업 및 심한 긴장,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안과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질환과는 달리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의 증상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건조감 때문에 불편을 호소한다면, 건강안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소유권은 담보권자에게 이전되므로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권리증이나 위임장만을 교부하고 아무런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담보 제공된 건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등기의 양도담보권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 이외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채무명의를 확보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양도담보물을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Q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양도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건물을 압류하였습니.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A 양도담보의 통상형태는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하지 않을 때 담보물에서 채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담보의 등기를 할 경우에도 원래는「담보를 위한」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원인이 되지만 실무상으로는 단순히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의 등기에 의하여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이지요.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정의 대한 책임감이 부과되고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합으로 얻은 가정이라는 행복과 함께 육체적·정신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집안 살림과 출산과 육아라는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오랫동안 배어온 다른 가정문화에서 새로운 가정문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고, 굳이 남을 돌보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제는 가족의 큰 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당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지금 힘겨워하는 것들을 남편 분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 필요한 단계라고 여기시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분과 진솔하게 남의 힘든 마음을 전해 보시고 남편의 마음도 들어 보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상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노력하며 이끌어 갈 때 더욱더 빛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의 :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Q 결혼 한지 6개월 정도 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즐거울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하고 나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결혼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구속시키는 거라면 차라리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것들만 생겼으면 좋겠지만 결혼이란 관계적인 면에서 내 마음대로 하였던 것들을 서로가 상의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고 이제는 혼자서 아닌 둘이서 생각을 해야 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함께 하는 생각과 마음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 전에 느꼈던 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더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사고들이 상대의 입장에서 많이 배려했던 것들도 결혼 후에는 조금씩 내보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좋게만 보였던 것들도 결혼 후에는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실망감도 생기게 되며 연인의 느낌에서 인간 대 인간의

A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셨는데 막상 하고나니 결혼 전에 느꼈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삶인 것 같고 남을 구속하는 것만 같아 힘이 드신 것 같네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모든 것들이 꿈꿔 왔던 것처럼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여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국세청에서 '재화의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시 누락된 웨이퍼의 가격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해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된 원자재의 가격은 수입가격신고 시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실판 2007관138,2008.7.25)】

Q 공급하고 패키징 가공을 의뢰하여 완성된 IC칩을 수입하면서, 해의 임가공업체에게 무상공급된 원자재 가격은 제외하고 임가공비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의 사후심사결과 무상공급된 원자재(웨이퍼)의 가격을 가산하여 수입가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A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통칙 13-48-7호)'는 규정을 준용하여, 청구법인이 해의 임가공업체에게 웨이퍼를 무상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임가공료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심판청구를 신청함.



포천시 상록회 회원 모집 공고

사단법인 한국상록회는

구한말 황성신문을 창간하여 민족의 정의의 주권을 옹호하였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학교를 세워 후세교육에 전념하였으며 겨레의 꽃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족혼을 일깨워준 남궁석 선생의 애국정신과 대표적인 민족주의 문헌인 '심훈 선생의 상록수'의 영향을 받아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되고, 독립사상을 지니게 된 춘천고보 학생들이 일제의 악랄한 식민정책과 탄압정책에 대하여 일본 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1937년에 '상록회'를 조직하여 우리말 우리글 사랑운동 전개, 민족사상을 고취시키는 연설회 개최, 청년학도의 귀농 운동과 우리나라의 독립을 계획하는 토론회 개최, 우리의 꽃 무궁화 심기 운동 등,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육고를 치른 그 숭고한 상록수 정신을 바탕으로 1970년 11월에 전국 규모의 상록회를 창설하고 38년 동안 한결 같이 인간의 진솔한 삶을 바탕으로 봉사하고 헌신에 뿌리 내려온 순수한 우리나라의 봉사단체이다.

- ▶설립일자 : 1970년11월14일
- ▶설립목적 : 환경보전운동과 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나라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
- ▶강령 및 신조
 - 강령 : 내 마음을 믿는가? · 부끄럽지 않은가? · 남에 무엇을 하였는가?
 - 신조 :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 개혁과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똘똘다.
 - 공익을 우선하고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똘똘다.
 - 숨어서 일하는 자세와 말보다 행동하는 것을 그 신조로 삼는다.
- ▶주요사업 활동
 - 환경보전활동
 - 청소년 교육 · 훈련지도사업
 - 구제사업
 - 충효상상 및 경로효친상상 합향

정기 이사회 개최 안내

- ▶일시 : 2008년 10월 1일(수) 19:00
- ▶장소 : 청정식당(☎ 543-8215)
- ▶대상 : 포천시상록회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사단법인 한국상록회 경기도 포천시 상록회
회원가입문의 : ☎ 031-542-1506~7(사무국장 김영복, 010-7588-7272)